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재정보증시행내규

제정 2007. 4. 1 내규 제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말한다.

1. 계약담당, 분임계약담당, 지출담당, 수입지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담당, 채권채무 관리담당, 분임채권 관리담당, 분임채무 관리담당
2. 수입담당, 분임수입담당, 물품총괄조정자, 물품관리담당, 물품출납담당, 분임물품출납담당
3.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의 보조자
4. 제1, 2, 3호에 해당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 담당으로 특히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직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직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보증은 이사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3조 제2항의 보험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제1호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2,000만원
2. 제2조의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검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이 다른 회계 관계직원을 검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검직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하며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관리담당으로 하여금 공단회계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